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4월 8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**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입법예고**

1. 제안이유

○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직명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인식변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“환경미화원”을 “환경공무원”으로 변경함.
- 나. 기타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(띄어쓰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2년 4월 13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강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**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**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1 -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환경미화원자녀들”을 “환경공무원 자녀들”로, “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”을 “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”을 “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”으로, “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”을 “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제1항 중 “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환경미화원자녀”를 “환경공무원 자녀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환경미화원자녀”를 “환경공무원 자녀”로 한다.

- 2 -

제5조 중 “환경미화원” 을 “환경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환경미화원” 을 “환경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환경미화원” 을 “환경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환경미화원 퇴직금” 을 “환경공무원 퇴직금” 으로,
“환경미화원 1명” 을 “환경공무원 1명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제정)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환경미화원” 을 “환경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	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 작구 소속 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 별시 동작구 <u>환경미화원자녀 학자 금대여기금</u> 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환경공무원 자녀들</u> ----- ----- <u>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</u> ----- -----.
제2조(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 금 조성)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<u>환 경미화원자녀 학자금</u> (이하 “학자 금”이라 한다)대여를 위한 서울특별 시 동작구 <u>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</u> 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2. (생 략) ② (생 략)	제2조(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 금 조성) ① ----- <u>환경 공무원 자녀 학자금</u> ----- ----- <u>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 여기금</u> ----- -----.
제3조의2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동작구 <u>환경미화원자녀 학 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</u> (이하	제3조의2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 ① ----- ----- <u>환경공무원 자녀 학자 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</u> -----

<p>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<u>환경미화원자녀</u> 학자금업무 담당직장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기금 회계직 공무원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<u>환경미화원자녀</u> 학자금업무 담당직장으로 한다. 다만,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5조(대여 대상)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<u>환경미화원</u>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, 대학(대학교 포함)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.</p> <p>제6조(대여제한대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부부가 <u>환경미화원</u>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<u>환경공무원</u> 자녀 -----.</p> <p>제4조(기금 회계직 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환경공무원</u> 자녀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대여 대상) ----- <u>환경공무원</u> -----.</p> <p>제6조(대여제한대상)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환경공무원</u> -----.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<p>제8조(대여금액 및 대여한도) ① (생략)</p> <p>② <u>환경미화원</u> 1명에 대한 대여대상 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제11조(채권보전) ① 대여금액 미상환 총액(신청금 포함)이 <u>환경미화원 퇴직금</u>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나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<u>환경미화원 1명</u>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8조(대여금액 및 대여한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환경공무원</u> -----.</p> <p>제11조(채권보전) ① ----- <u>환경공무원 퇴직금</u> ----- <u>환경공무원 1명</u>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